



조선시대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교체사유*

— 『府尹先生案』을 중심으로 —

권 기 중

I. 머리말

III. 재임실태

II. 지역 현황과 수령의 성분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시대 수령들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여 각종 사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거나 범죄자를 처벌하는 등 지방 통치의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수령들의 임기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수령들은 지역 상황의 변화나 정치적인, 혹은 개인적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훨씬 다양한 이유로 수령은 임기를 다하지 못하였다.¹⁾ 이러한 현상은 특정 시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수령의 재임기간이 19세기에 와서 이전 시기에 비해 더 길어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²⁾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1)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 본 朝鮮後期の 守令」, 『경북사학』 4, 1982 ; 具玩會, 「世宗朝의 守令六期法」, 『경북사학』 11, 1988 ; 李源鈞, 『朝鮮時代 地方官의 交遞에 관한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李東熙, 「19世紀 前半 守令의 任用實態」, 『전북사학』 11·12, 1989 ; 李東熙, 「朝鮮時代 全羅道 扶安縣監의 任用實態」, 『전라문화논총』 6, 1993 ; 李成姪, 「조선시대 仁川府使의 임용실태」, 『박물관지』 4, 2002 ; 이성임, 「조선시대 富平府使의 재임실태」, 『인천학연구』 2(1), 2003 ; 김양수·김양식, 「조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令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 125, 2004 ; 宋鍾復, 昌寧縣監의 交遞와 在任에 關한 一考察 『문명연지』 17, 2006 ; 김의환, 「조선시대 丹陽郡守의 前歷과 在任 實態 - 『丹陽郡先生案』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11.

이같이 수령들의 재임실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문제의식과 더불어 더 많은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수령들의 출사로와 재임실태는 상관성이 있는가? 難治之邑의 수령들의 재임실태는 다른 군현에 비해 의미 있는 특성이 드러나는가? 19세기에 와서 善治수령이 늘어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미해명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난치지읍이었던 경주부의 수령의 재임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주부가 다스리기 힘든 난치지역으로 불렸던 이유는 관할 경내가 너무 넓고, 물산이 많아 통치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³⁾

경주는 기존에 살펴 본 다른 군현과 비교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먼저 수령 가운데 가장 높은 품계인 종2품의 부윤이 부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 둘째 난치지읍으로 유명했다는 것, 셋째 대부분의 다른 지역 수령선생안과 달리 조선전기부터 재임기간과 교체 사유가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경주의 수령인 경주 부윤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가 있다. 이수건은 본 글에서 주자료로 활용하는 『부윤선생안』을 이용하여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교체 사유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였다. 하지만 그의 분석을 통해서서는 경주 부윤의 시기에 따른 재임기간과 교체사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시기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조선전기(1392~1592)와 조선후기(1593~1863)로 나누어 두 시기 수령의 재임기간을 분석하였고, 교체사유는 전·후기로도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만기·징계·사임·사망 등의 인원수만 기록하였다.⁴⁾ 이외에도 조철제는 경주 부윤의 평균 임기와 품계를 정리하였으며,⁵⁾ 『경주시

2)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 - 전복 25개 군현을 대상으로」, 『태동고전연구』 41, 2018 ;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

3) 『承政院日記』 현종 10년 1월 6일, “許積曰 人君用人 惟在於棄其短而用其長 易此則敗矣 臣請因此而白之 慶州爲邑物衆地大 且多弊癘 素稱難治” ; 『承政院日記』 숙종 6년 12월 22일, “慶州爲邑 物衆地大 素號難治 苟非其人 莫可彈壓” ; 『承政院日記』 숙종 9년 6월 29일, “院啓 金重夏事 金煥事 措語竝見上 新啓 慶州 乃嶺南一都會 而府尹 亦二品階秩 非尋常州牧之比也 日者 罷格擇差 雖爲一時蔭殘之地 而本非蔭路常窠 苟非地望特優 履歷素積者 其不可輕授也 明矣.”

4)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262-263쪽 참조.

5) 趙喆濟, 「『慶州先生案』의 內容分析和 傳來經緯」, 『신라학연구』 6, 2002, 85-86쪽 참조.

지』에는 왕대별로 부임한 수령 명단을 적시하여 왕대별로 임명된 부윤을 확인할 수 있다.⁶⁾ 이러한 연구를 통해 경주 부윤과 관련된 대체적인 사항이 밝혀졌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교체사유에 대한 시기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II. 지역 현황과 수령의 성분

1. 지역 현황

조선후기 경주부의 수령은 지방관 가운데 가장 높은 품계인 종2품의 부윤이 다스리던 군현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경주부는 16세기까지 安康, 杞溪, 慈仁, 神光 등 4개현을 屬縣으로, 仇史, 竹長, 北安谷 등을 部曲으로 다스리는 대읍이었다.⁷⁾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경상도 감영이 대구로 옮겨져 留營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경주의 위상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자인현이 인조 15년(1637)에 독립되어 나갔고, 이어서 구사부곡마저 효종 4년(1653)에 자인현에 이속됨에 따라 경주의 지배 영역이 약간 축소되었다. 임란 이후 鎭管의 범위도 축소되었다. 東萊縣이 부로 승격되면서 독립된 진으로 분리되어 나갔고, 이어서 機張縣도 떨어져 나갔다. 이에 경주 진관의 관할 지역은 군에서 부로 승격된 蔚山과 梁山, 永川, 興海 3개군, 清河, 延日, 長鬐, 彦陽 4개 현만이 남게 되었다. 그후 양산조차 다시 동래 진관에 이속되어 경주 진관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경주 부윤은 종2품의 품계를 가진 자로 파견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와서는 정3품의 품계를 가진 자가 주로 파견되었다.⁸⁾ 부윤과 함께 지방관으로 파견되었던 判官은 1670년 경 백성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혁파되었다.

경주의 수령에 부윤이 아닌 牧使나 府使가 부임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6) 『慶州市史』 제2편 역사,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 324-325쪽 참조.

7) 위의 책, 258쪽 참조.

8) 후술하겠으나, 경주 부윤은 이미 16세기부터 정3품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주로 부임하였다.

綱常 사건으로 말미암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효종 1년(1650) 경주부의 속현인 기계현에 大立이라는 노비가 예천에서 도망 와서 살고 있다가 잡으러 온 주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바 있었다. 이로 인해 경주는 牧으로 강등되었고, 수령도 정3품의 목사로 바뀌었다. 이러한 강등조치는 보통 10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10년 후인 현종 즉위년(1659)에 다시 부로 승격되었다. 그 후 현종 6년(1665)에 다시 강상 사건이 일어났다. 西面에 사는 李萬伊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경주는 목보다도 한 등급 더 낮은 도호부로 강등되었고, 부사가 파견되었다. 14년 뒤인 숙종 5년(1679)에 다시 부로 회복되어 부윤이 파견되었다. 고종 32년(1895)에 행정구역을 8도 체제에서 23府체제로 개편하였을 때, 경주는 경주군으로 개칭되어 대구부에 예속되었지만, 이듬해 13도체제로 복귀되었을 때 경주군은 경상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때 외남면이 경상남도 언양군으로 이속되어 경주의 영역이 약간 축소되었다. 1906년에는 동해면에 해당되는 감포, 양북, 양남이 장기군으로, 기계와 신광면이 흥해군으로, 죽장면이 청하면으로, 북안면이 영천군으로 각각 이속되어 경주군의 영역은 대폭 축소되었다. 이후 1914년 대대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이 단행될 때 양남과 양북이 경주로 환원되었다.⁹⁾ 이 같이 경주는 시기에 따라 관할영역과 행정단위의 부침이 있었으나, 부윤이 부임하는 위상에 걸맞게 상당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18세기 중엽에 작성된 『여지도서』에 의하면 호구와 전결수가 각각 17,219戶에 70,891口가 살고 있었으며, 부내에는 한전 10,417결과 수전 7,119결 등 총 17,536결의 전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경상도 내에서 수위를 차지할 만큼 높은 수치였다. 이 시기 양역자원은 『영역실총』에 의하면 7,061명에 이르고 있었는데, 이는 상주의 8,062명 다음가는 수치였다.¹⁰⁾

이러한 경주부의 위상에 걸맞게 경주에서는 부윤에 관해서 상세한 선생안을 남겨 두었다. 경주의 『부윤선생안』은 1982년에 경주시립도서관에 소장된 5종의 선생안을 묶어 엮은 『경주선생안』에 이미 소개되어 학계에 잘 알려져 있다.¹¹⁾ 『부윤선생안』에는 고려시대 경주 부윤에 해당하는 경주 外官

9) 위의 책, 323-326쪽 참조.

10) 문광균, 19세기 경주부의 재정운영과 임술민란 『역사와 담론』 65, 2013, 43쪽 참조.

11) 경주지역에는 『道先生案』 『府尹先生案』 『戶長先生案』 『上詔文先生案』 『講武堂先生案』 등 5종의 선생안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해제와 전래경위 등은 다음

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頭註에 태조강헌대왕 즉 위라 기재된 부윤 兪光祐¹²⁾를 기점으로 하여 조선시대 경주 부윤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수령의 성분

경주의 『부윤선생안』에는 조선시대 경주 수령으로 태조 1년(1392)에 임명된 부윤 유광우부터 광무 7년(1903)에 군수로 임명된 박병익까지 모두 345명이 기재되어 있다.

<표 1> 『부윤선생안』에 기재된 경주 부윤의 액수¹³⁾

세기	관직	인원	미부임
14	부윤	8	
15	부윤	53	
16	부윤	49	
17	부윤	57	
	목사	4	
	부사	9	
18	부윤	69	
19	부윤	89	19
	군수	3	
20	군수	4	
합계		345	19

의 두 논문이 참조된다(許興植, 「『경주선생안』 해제」, 『慶州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 趙喆濟, 앞의 논문).

12) 이하 부윤의 성명은 한글로 하며, 한자 이름은 <부표1>을 참조하기 바람.

13) 경주 수령 345명 가운데, 미부임 19명, 경주 군수 7명 제외한 319명이 분석대상임. 미부임 수령과 행정체계 변경 후 경주 군수로 경주에 부임한 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관직	성명	성명1	품계	묘호(임용)	묘호(래,도임)	묘호(래,도임)	교체사유
부윤	송수연	宋守淵	통정		순조11		政 下批未赴任
부윤	윤치겸	尹致謙	통정		순조23		未赴任
부윤	이세용	李世用	통정				未赴任
부윤	홍재순	洪載順	통정				未赴任
부윤	이준재	李駿在	통정				未赴任
부윤	정순조	鄭順朝	통정				未赴任

하지만 이 가운데는 실제로 부임하지 않은 인물들 19명과 1895년 행정체계가 경주군으로 바뀌어 군수로 임명된 7명을 제외하면, 경주부의 수령으로 임명된 자들은 319명이다. 목사와 부사로 임명된 자들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邑降 시기에 임명된 경주 수령들이다.¹⁴⁾ 이들 319명이 본 글에서 분석할 경주부의 수령이다.

<표 2> 시기별 경주 부윤의 품계의 변화양상

	14C		15C		16C		17C		18C		19C	
품계/인원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중1품	0	0	1	1.9	0	0	0	0	0	0	1	1.4
정2품	7	87.5	8	15.1	1	2.0	3	4.3	0	0.0	0	0
중2품	1	12.5	40	75.5	11	22.4	16	22.9	9	13.0	18	25.7
정3품당상	0	0	4	7.5	37	75.5	51	72.9	60	87.0	51	72.9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관직	성명	성명1	품계	묘호(임용)	묘호(래,도임)	묘호(래,도임)	교체사유
부윤	홍칠주	洪澈周	통정				未赴任
부윤	장석룡	張錫龍	통정				未赴任
부윤	정직조	鄭稷朝	통정				未赴任
부윤	홍순학	洪淳學	통정				未赴任
부윤	서경순	徐經淳	통정				未赴任
부윤	민영상	閔泳相	통정				未赴任
부윤	조은승	曹殷承	통정				未赴任
부윤	이영목	李永穆	통정				未赴任
부윤	김덕균	金應均	통정	고종19			未赴任
부윤	서정순	徐正淳	가선				未赴任
부윤	이호익	李鎬翼	통정		고종24		下批未赴任
부윤	이태진	李泰鎭	통정		고종25		政 下批未赴任
부윤	성기운	成岐運	통정		고종26		政 下批未赴任
군수	이현주	李玄澍		고종32	고종32	上官	
군수	권상문	權相文					
군수	조의현	趙儀顯	가선		광무3	到任	
군수	김천수	金天洙	통정		광무4	上官	
군수	박병익	朴炳翊	통정		광무4	上官	
군수	김윤란	金允蘭	가선		광무5	上官	
군수	박병익	朴炳翊	통정		광무7	上官	

14) 이들은 부사와 목사였으나, 본 글에서는 편의상 경주 부윤 혹은 경주 수령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먼저 <표 2>를 통해 시기별 경주 부윤들의 품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14세기에는 부윤의 품계인 종2품보다 상위의 품계인 정2품의 품계를 가지고 부임한 자들이 8명 가운데 7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15세기에는 종2품의 품계를 가지고 부임한 자들이 53명 가운데 75.5%인 4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하위 품계인 정3품 당상인 통정대부는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주 부윤의 품계는 16세기부터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이 시기부터는 정3품 당상의 품계를 지닌 채 경주 부윤에 부임하는 자들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법으로 정한 부윤의 품계인 종2품보다 하위의 품계를 지닌 채 부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특히 18세기에는 87%의 부윤이 정3품 당상 출신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목사, 현령 등이 상위의 품계를 지닌 채(=階高職卑) 해당 군현에 부임하는 현상과는 대비되는 현상이다.¹⁵⁾ 경주가 비록 옛 수도이자 경상도 방어의 핵심지역으로서 그 격이 높았다고 하나 난치지읍으로 악명이 높았던 것도 이유 중 하나였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의 出仕路를 살펴보았다.

<표 3> 시기별 경주 부윤 출사로의 변화양상¹⁶⁾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문과	5	62.5	21	39.6	46	93.9	67	95.7	63	91.3	54	77.1
무과	0	0	2	3.8	1	2.0	0	0	0	0	0	0
음직	1	12.5	5	9.4	0	0	3	4.3	2	2.9	10	14.3
미상	2	25.0	25	47.2	2	4.1	0	0.0	4	5.8	6	8.6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표 3>을 통해 경주 부윤 출사로가 시기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된다.¹⁷⁾ 문과 출신의 경주 부윤은 16~18세기까지는 90%이상의

15) 다른 군현의 수령과의 비교는 권기중, 2018, 2020, 앞의 논문 참조. 이하 동일.

16) 보다 자세한 경주 부윤의 개별 출사로는 <부표 1> 참고.

17) 출사로에 대한 조사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을 주로 이용하였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14세기, 15세기, 19세기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았다. 14세기, 15세기에 문과 출신의 비중이 낮은 것은 14세기에는 소수의 인물을 대상으로 비중을 계산했기 때문이고, 15세기에는 출사로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15세기에 출사로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많았던 것은 고려시기에 출사한 인물이 많았기 때문에 출사 여부가 현존하는 문·무과방목이나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19세기에 문과 출신의 비중이 줄어들고 음직과 출사로를 알 수 없는 인물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19세기에 경주 부윤을 역임했음에도 문과나 무과 방목 등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6명을 비롯하여 음직이 10명(생원 4명, 진사 5명, 음관 1명)이나 된다는 것은 종2품이 부임하는 경주 부윤의 위상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어떤 관직에 있었는지 살펴 보았다.

<표 4> 경주 부윤의 부임 직전의 관직과 시기(세기)

구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구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경관	한성판윤	정2품	1(19C)		양주목사	정3품	2(19C)
	동지중추부사	종2품	1(17C)		여주목사	정3품	2(17C,19C)
	敦寧府都正	정3품 당상	1(19C)		청주목사	정3품	1(19C)
	승지	정3품 당상	9(17C 2명, 18C 7명)		담양부사	종3품	1(17)
	공조참의	정3품 당상	1(19C)		밀양부사	종3품	2(17C)
	예조참의	정3품 당상	1(16C)		안변부사	종3품	1(19C)
	이조참의	정3품 당상	1(18C)		영해부사	종3품	1(17C)
	형조참의	정3품 당상	1(16C)		영흥부사	종3품	1(19C)
	호조참의	정3품 당상	5(16C,17C 2명,18C 2명)		이천부사	종3품	1(19C)

구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구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판결사	정3품 당상	1(18C)		간성군수	종4품	1(17C)
	병조참지	정3품	1(18C)		금산군수	종4품	1(17C)
	소계		23		무장현감	종6품	1(19C)
지방관	안동대도호부사	정3품	2(15C,17C)	무관	소계		22
	공주목사	정3품	1(16C)		절제사	정3품	1(15C)
	광주목사	정3품	1(19C)		행호군	정4품 이상	1(19C)
	나주목사	정3품	1(19C)		부호군	종4품	1(17C)
	상주목사	정3품	1(16C)		소계		3
	성주목사	정3품	1(16C)		합계		48

<표 4>에서 보듯이 경주 부윤으로 부임하기 바로 전의 관직이 확인되는 인물들은 모두 48명이다. 경관이 23명, 지방관이 22명이고, 무관은 3명이다. 경관과 지방관의 비중이 비슷하며, 무관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경관은 종2품 이상이 2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3품 당상의 품계를 지니고 있다. 승지와 육조 참의로서 부윤에 참여하는 자가 각각 9명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보아 경관으로 부윤이 된 자들은 상당히 요직에 있다가 경주 부윤에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관의 비중은 19세기에 오면 한성판윤을 비롯하여 3명에 불과하여 17세기 5명, 18세기 12명에 비해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8세기에 비해 경관 출신의 경주 부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지방관 출신으로 경주 부윤에 임명된 자들은 정3품 당상 이상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고종6년(1869)에 부윤으로 임명된 조기영은 종6품 관직인 무장현감으로 있다가 부윤이 되기도 하였다. 지방관으로 부윤이 된 자들은 15세기 1명, 16세기 3명, 17세기 8명, 18세기 0명, 19세기 10명으로 19세기에 가장 많았다. 경주 부윤의 위상이 19세기에 와서 한층 낮아졌음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을 지낸 직후에 어떤 관직에 임명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5> 경주 부윤의 부임 직후의 관직과 해당 시기

구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구분	관직	품계	인원 (세기)
경 관	판의금부사	종1품	1(19C)	무 관	양주목사	정3품	2(19C)
	공조참판	종2품	1(19C)		청주목사	정3품	1(19C)
	이조참판	종2품	2(17C,19C)		동래부사	종3품	2(19C 2명)
	대사헌	종2품	2(15C,18C)		밀양부사	종3품	1(19C)
	동지중추부사	종2품	3(15C,16C 2명)		영변부사	종3품	1(19C)
	中樞院副使	종2품	6(15C)		덕원부사	종3품	1(19C)
	우윤	종2품	1(16C)		영광군수	종4품	1(19C)
	좌윤	종2품	1(16C)		소계		16
	한성尹	종2품	1(15C)		좌군총제	2품 이상	1(15C)
	공조참의	정3품 당상	1(16C)		우도병마도절제사	종2품	1(15C)
	대사간	정3품 당상	7(18C 5명,19C 2명)		좌도병마절제사	종2품	1(15C)
	부제학	정3품 당상	1(18C)		함경북병사	종2품	1(17C)
	우부승지	정3품 당상	3(18C,19C 2명)		행상호군	정3품 당하 이상	1(15C)
	좌부승지	정3품 당상	1(19C)		상호군	정3품 당하	3(16C)
	이조참의	정3품 당상	1(18C)		행대호군	종3품 이상	1(15C)
	형조참의 동지부사	정3품 당상	1(17C)		행호군	정4품 이상	1(15C)
	호조참의	정3품 당상	2(17C)		호군	정4품	2(16C)
	첨지중추부사	정3품	2(15C,16C)		부호군	종4품	1(15C)
	소계		37		行司直	정5품 이상	1(15C)
지 방 관	강원도관찰사	종2품	2(18C)		行司猛	정8품 이상	1(15C)
	경상도관찰사	종2품	2(18C)		소계		15
	충청도관찰사	종2품	2(18C)				
	성주목사	정3품	1(16C)		합계		68

<표 5>에서 보듯이 경주 부윤에서 교체된 직후의 관직이 확인되는 인물들은 모두 68명이다. 경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이 37명, 지방관이 된 자들이 16명, 무관직으로 옮긴 자들이 15명이다. 경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이 반수를 약간 넘어서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한직인 지방관이나 무관이 된 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경관이 된 자들은 종2품 이상이 18명인데, 15세기 9명, 16세기 4명, 17세기 1명, 18세기 1명, 19세기 3명이다. 대부분 15세기에 몰려 있고, 다른 시기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정3품 당상 이하가 19명인데, 15세기 1명, 16세기 2명, 17세기 3명, 18세기 8명, 19세기 5명이다.

경주 부윤으로 있다가 지방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은 16명이다. 종2품의 관찰사로 영전한 인물이 6명 확인되는데, 모두 18세기의 인물들이었다. 반면 정3품 이하가 10명인데, 16세기의 성주목사 외에는 모두 19세기에 목사나 부사, 혹은 군수로 자리를 옮겼다. 부윤보다 하위의 자리로 옮긴 것이라 할 수 있다. 무관으로 자리를 옮긴 자들은 모두 15명인데, 15세기에 9명, 16세기에 5명, 17세기에 1명으로 18세기 이후에는 확인되지 않는다.¹⁸⁾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19세기에 들어와 경주 부윤의 위상이 이전 시기에 비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III. 재임실태

1. 재임기간

수령의 재임기간은 세종 이전까지는 30개월이었다가,¹⁹⁾ 세종 7년 이후에는 수많은 논의를 거쳐 60개월로 두 배가 늘어났다.²⁰⁾ 수령 임기는 『경국대전』에 확정되었는데, 수령은 1,800일(60개월), 당상관과 가족을 동반하지 않

18) 이들 중 다수는 상호군 등 호군의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관직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호군 관직을 가지고 지위의 높낮이를 구분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19) 『세종실록』 권28, 세종 7년 6월 경자.

20) 구완회, 1988, 앞의 논문 참조.

는 未挈家守令과 訓導는 900일이 되었다.²¹⁾ 경주의 수령은 종2품의 부윤이 부임하는 지역임으로 900일의 재임기간이 법정 임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수령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재임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경주의 경주는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이 이 절의 목적이다.

먼저 경주 부윤으로 임명 받은 날로부터 경주부에 도임하기까지 며칠이 걸렸는지 살펴보았다. 『부윤선생안』에는 18세기까지는 임용일과 도임일이 동시에 기록된 경우가 거의 없으나, 다행스럽게 19세기의 경우 부윤 이채(순조 9년, 1809)부터 마지막 경주 부윤인 남학회(고종 31, 1894)까지 부윤 60명의 임용일과 도임일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²²⁾ 이를 통해 최소한 19세기 경주 부윤에 임명된 사람들이 임명일로부터 며칠 만에 경주부에 도임했는지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²³⁾

<표 6> 경주 부윤의 임명에서 도임까지의 기간(日)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임일	기간 (日)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임일	기간 (日)
1	이채	1809,8,10	1809,9,1	21	31	이원조	1849,4,23	1849,5,1	8
2	김노응	1811,6,1	1811,6,17	16	32	심돈영	1850,4,19	1850,5,25	36
3	신숙	1812,4,20	1812,5,20	30	33	김양근	1851,4,16	1851,5,21	35
4	홍이간	1813,7,28	1813,8,18	20	34	남성교	1852,10,22	1852,12,22	60
5	이덕현	1815,9,14	1815,10,6	20	35	박종휴	1854,6,17	1854,7,12	25
6	이우재	1817,12,27	1818,1,30	33	36	송근수	1855,12,2	1856,1,18	46
7	윤우열	1818,10,27	1818,11,22	25	37	윤행모	1857,5,6	1857,윤5,19	43
8	홍면섭	1819,6,25	1819,7,29	34	38	김재전	1858,3,19	1858,4,19	30
9	이광현	1820,7,11	1820,8,10	29	39	윤육	1862,5,2	1862,5,28	26
10	이로	1821,12,28	1822,1,24	26	40	유석환	1866,8,1	1866,8,21	20
11	김기상	1823,4,22	1823,6,2	40	41	조기영	1869,1,2	1869,2,18	46
12	박기평	1825,6,22	1825,7,14	22	42	이능섭	1871,6,20	1871,6,25	5
13	임안철	1825,12,28	1826,1,29	31	43	이만운	1871,9,7	1871,9,29	22
14	임처진	1827,1,9	1827,1,30	21	44	임한수	1873,12,26	1874,2,21	55
15	이원팔	1827,12,22	1828,2,7	45	45	이돈상	1875,4,3	1875,5,14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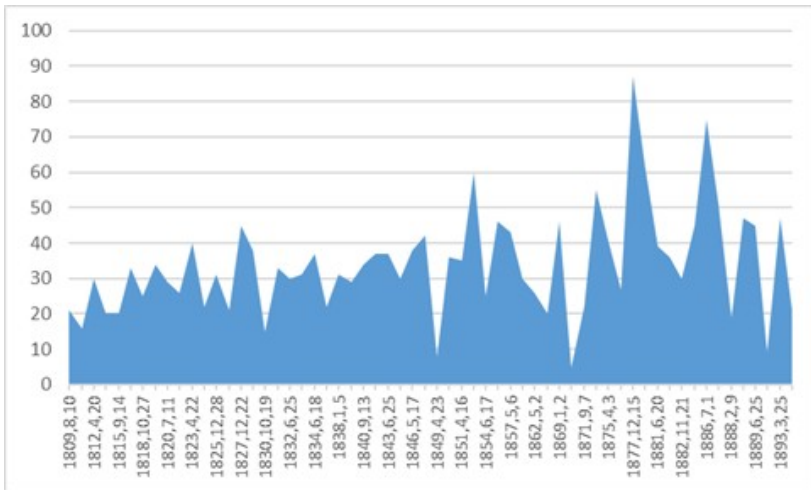
21) 『經國大典』, 『吏典』, 外官職, “守令仕滿一千八百 堂上及未挈家守令 訓導仕滿九百乃遞”.

22) 이 가운데 조준구는 1887년에 부임한 후 3개월 만에 밀양부사로 이배했다가, 1888년에 다시 부윤이 되었다.

23) 율력은 양력과 달리 같은 달이라도 매년 큰 달(30일), 작은 달(29일)이 달라 편의상 달의 일 수를 큰 달인 30일로 계산하였다(-2월 달은 28일로 계산하였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하루가 더 계산되었다.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입일	기간 (日)	번호	부윤	임명일	도입일	기간 (日)
16	이근중	1829,12,25	1830,2,3	38	46	김석진	1876,4,27	1876,5,24	27
17	박종훈	1830,10,19	1830,11,4	15	47	민창식	1877,12,15	1878,3,12	87
18	정예용	1831,3,12	1831,4,15	33	48	민치서	1879,2,16	1879,윤3,20	62
19	홍중원	1832,6,25	1832,7,25	30	49	오취선	1881,6,20	1881,7,29	39
20	김매순	1833,8,21	1833,9,22	31	50	정현석	1882,6,18	1882,7,24	36
21	윤치겸	1834,6,18	1834,7,25	37	51	김원성	1882,11,21	1882,12,21	30
22	이인필	1836,11,6	1836,11,28	22	52	민영규	1885,4,14	1885,5,29	45
23	조기복	1838,1,5	1838,2,6	31	53	송도순	1886,7,1	1886,9,16	75
24	유장환	1839,1,7	1839,2,6	29	54	조준구	1887,5,20	1887,7,11	51
25	정취조	1840,9,13	1840,10,17	34	55	김철희	1888,2,9	1888,2,28	19
26	박장복	1841,12,14	1842,1,21	37	56	조준구	1888,9,20	1888,11,7	47
27	이현기	1843,6,25	1843,윤7,2	37	57	민영직	1889,6,25	1889,8,10	45
28	성원목	1844,2,25	1844,3,27	30	58	노영경	1890,2,16	1890,2,25	9
29	이시우	1846,5,17	1846,윤5,25	38	59	민치현	1893,3,25	1893,5,12	47
30	권직	1847,12,30	1848,2,12	42	60	남학희	1894,6,24	1894,7,15	21

<그림 1> 경주 부윤의 임명에서 도입까지의 기간(日)



*그림의 날짜는 경주 부윤의 임명일

경주 부윤에 임명된 날로부터 경주 관아에 도입한 날짜는 평균 34일이었다.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짧은 기간에 도입하는 수령들이 있었던 반면, 두 달이 넘어 도입하는 수령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한 달 남짓한 기간이면 경주 부윤의 임무를 시작한 것이다. 도입 날짜가 들쭉날쭉한 이유는 저간의 사정이 다 달랐기 때문이었지만, 이전 근무지와와 거리도 한 몫을 한 것은 분명하다. 경주 부윤으로 임명되기 전에 함경도 영흥부사였던 송도순이 75일이 걸린 사례가 그러하다. 하지만 부윤 민창식이 87일이 걸린 것이나, 이천부사였던 민치서가 62일이나 걸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도입 일수는 대체적으로 19세기 후반으로 올수록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많지 않은 통계이나 경주부윤으로 부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렸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부윤으로 임명되기도 미부임한 19명 가운데 순조년간의 2명을 제외하면, 모두 고종연간에 미부임자들이 속출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경주 부윤이 더 이상 이전 시기에 비해 매력적인 관직이 아니게 된 것이다.

<표 7>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시기별 분포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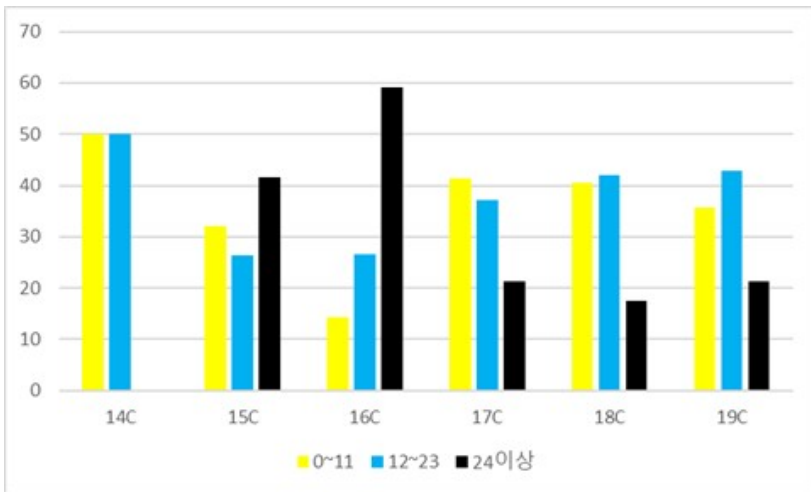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소계	
개월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명수	%
0~5	2	25	7	13.2	4	8.2	11	15.7	5	7.2	6	8.6	35	11.0
6~11	2	25	10	18.9	3	6.1	18	25.7	23	33.3	19	27.1	75	23.5
12~17	4	50	8	15.1	9	18.4	16	22.9	15	21.7	22	31.4	74	23.2
18~23	0	0	6	11.3	3	6.1	10	14.3	14	20.3	8	11.4	41	12.9
24~29	0	0	5	9.4	12	24.5	9	12.9	11	15.9	14	20.0	51	16.0
30~35	0	0	11	20.8	15	30.6	5	7.1	1	1.4	1	1.4	33	10.3
36~41	0	0	1	1.9	0	0.0	1	1.4	0	0.0	0	0.0	2	0.6
42~47	0	0	0	0.0	1	2.0	0	0.0	0	0.0	0	0.0	1	0.3
48~53	0	0	2	3.8	1	2.0	0	0.0	0	0.0	0	0.0	3	0.9
54~59	0	0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60~65	0	0	3	5.7	0	0.0	0	0.0	0	0.0	0	0.0	3	0.9
66~70	0	0.0	0	0.0	1	2.0	0	0.0	0	0.0	0	0.0	1	0.3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319	100

24) 경주 부윤 개인별 자세한 재임기간과 교체사유는 <부표 1> 참조.

<표 7-1> 경주 부윤의 재임기간과 시기별 분포

시기	14C		15C		16C		17C		18C		19C	
개월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11	4	50.0	17	32.1	7	14.3	29	41.4	28	40.6	25	35.7
12~23	4	50.0	14	26.4	13	26.5	26	37.1	29	42.0	30	42.9
24이상	0	0.0	22	41.5	29	59.2	15	21.4	12	17.4	15	21.4
소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그림 2> 경주 부윤의 시기별 재임기간 비중



<표 7>·<표 7-1>·<그림 2>를 통해 경주 부윤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았다.²⁵⁾ 먼저 경주 부윤의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을 채운 비중을 살펴보면 각각 32.2%(15세기), 36.6%(16세기), 8.5%(17세기), 1.4%(18세기), 1.4%(19세기)였다. 15~16세기에는 30%대였던 비중이 18, 19세기에는 각각 1.4%(1명)에 불과하다. 후술하겠으나 24개월 이상 재임한 경우에 임기를 채운 滿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됨으로 24개월 이상을 재임기간으로 하는 비중도 살펴보았다. 시기별로 41.5%(15세기), 59.2%(16세기), 21.4%(17

²⁵⁾ 14세기는 부윤 8명이 모두 23개월 미만의 부임기간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 처리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본문에서 다루기 않았다.

세기), 17.4%(18세기), 21.4%(19세기)였다. 조선 전기에 비해 17세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다. 둘째, 재임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32.1%(15세기), 14.3%(16세기), 41.4%(17세기), 40.6%(18세기), 35.7%(19세기)였다. 16세기의 14.3%에 비해 17, 18세기에는 40% 이상의 인물들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윤에서 교체되고 있었다. 19세기에 그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으나 큰 의미를 가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셋째, 1년에서 2년 사이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15, 16세기에는 20%대였다가 18, 19세기에 40%대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년을 채우지 않고 경주 부윤에서 교체되는 자들이 17세기 이후 80% 내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9세기에 와서 전라도에 부임하는 수령 가운데 현령·현감 등 종5품과 종6품의 수령들은 전반적으로 24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을 재임하는 반면, 목사·부사 등 종3품 이상의 높은 품계의 수령들은 12~23개월 근무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현상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높은 품계의 수령들이 낮은 품계의 수령보다 교체 시기가 빨랐던 것이다. 다음으로 교체 사유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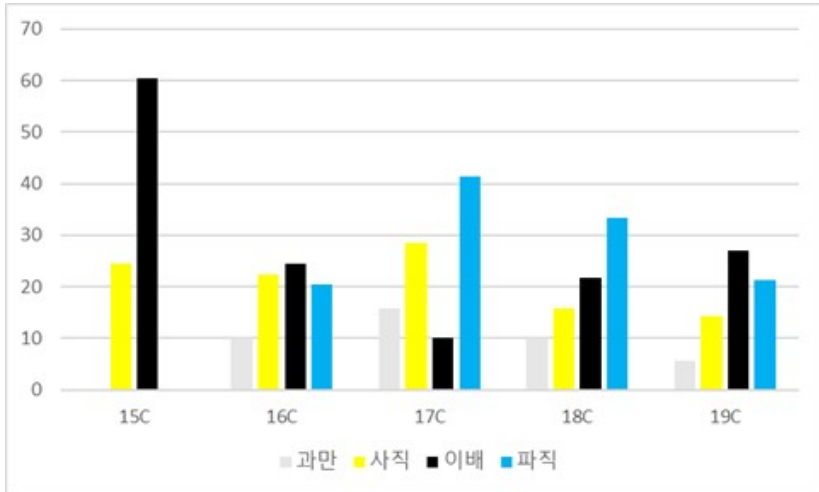
2. 교체사유

경주 부윤의 교체 사유는 법정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는 瓜滿, 병이나 사망, 상피 등으로 인한 辭職, 경관이나 지방관으로의 移拜, 관찰사의 포폄, 암행어사나 대간의 啓狀으로 인한 罷職 등 매우 다양했다. 이들 교체 사유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8> 경주 부윤의 시기별 교체사유

시기 교체 사유	14C		15C		16C		17C		18C		19C		합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과만	0	0	0	0.0	5	10.2	11	15.7	7	10.1	4	5.7	27	8.5
사직	0	0	13	24.5	11	22.4	20	28.6	11	15.9	10	14.3	65	20.4
이배	8	100	32	60.4	12	24.5	7	10.0	15	21.7	19	27.1	93	29.2
파직	0	0	0	0.0	10	20.4	29	41.4	23	33.3	15	21.4	77	24.1
기타	0	0	8	15.1	11	22.4	3	4.3	13	18.8	22	31.4	57	17.9
합계	8	100	53	100	49	100	70	100	69	100	70	100	319	100

<그림 3> 경주 부윤의 시기별 교체사유(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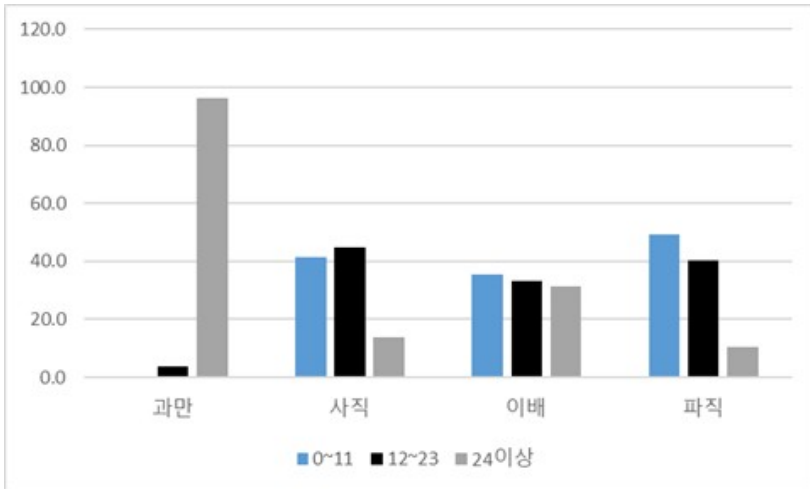
<표 8>과 <그림 3>을 통해 몇 가지의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14세기와 15세기에는 경주 부윤의 교체 사유로 사직, 이배만 확인되며 파직, 과만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16세기 이후에는 10% 내외의 과만과 20%가 넘는 파직이 교체 사유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17세기, 18세기에는 파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세기에는 파직보다 이배로 인한 교체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배가 파직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군현에서도 확인된다. 사직은 자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7세기에 다소 비중이 높았다고는 하나 전 시기에 걸쳐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각각의 교체 사유를 재임기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²⁶⁾

26) 기타는 교체의 이유를 『경주부윤선생안』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遞, 遞職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교체 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9> 재임 기간과 교체 사유의 상관성

교체사유 재임기간 (개월)	과만		사직		이배		파직		기타		합계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인원	%
0~11	0	0.0	27	41.5	33	35.5	38	49.4	12	21.1	110	34.5
12~23	1	3.7	29	44.6	31	33.3	31	40.3	23	40.4	115	36.1
24이상	26	96.3	9	13.8	29	31.2	8	10.4	22	38.6	94	29.5
합계	27	100	65	100	93	100	77	100	57	100	319	100

<그림 4> 재임 기간과 교체 사유의 상관성(비중)



1) 瓜滿

과만에는 『부운선생안』에 교체 사유가 ‘箇滿去’, ‘瓜遞’, ‘瓜遞去’, ‘瓜滿僉知去’ 등으로 기재된 자들이 해당된다. ‘임기를 채우고 침지로 갔다(瓜滿僉知去)’와 같이 임기를 채우고 다른 벼슬로 이배된 자들도 여기에 포함시켰는데, 이에 해당되는 자들은 3명이다.²⁷⁾ <표 9>에서 보듯이 과만에 해당하는 27명 가운데, 26명은 24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냈다. 이 가운데

27) 이들은 분류 방식을 달리 한다면 이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낸 인물들은 14명이다. 임기를 채운다는 것이 요즘의 기준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재임을 한다면 만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4개월도 채우지 않고 과만으로 인정 받은 사람도 1명이 있었으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인다.²⁸⁾

2) 辭職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사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65명이다. 이 가운데 교체 사유가 ‘辭遞’, ‘棄官’, ‘辭職上京’, ‘由狀遞歸’, ‘還第’, ‘受由上京呈遞’ 등과 같이 사직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가 28건이다. 교체 사유가 ‘病辭去’, ‘以病辭歸’ 등 병으로 인한 경우가 10건, ‘卒逝’, ‘別世’, ‘傷寒別世’, ‘易簣’ 등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가 16건, ‘繼母在喪’, ‘以親親受由上京 因眠病呈遞’²⁹⁾와 같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것 3건, ‘以兵使相避遞職’ 등과 같이 상과 2건, ‘受由上京以山陵奉審事仍遞’와 같이 업무와 관련된 것 6건이다. 사직의 원인 가운데 병과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65명 가운데 56명(86.2%)이었다.

3) 移拜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이배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93명이다. 이들을 경관, 지방관, 무관, 기타로 분류해 보았다. 이 가운데 경관은 36명, 지방관은 24명, 무관은 14명, 기타 19명이었다. 기타는 ‘政盛上京’³⁰⁾과 옮겨간 관직이 불분명하지만 이배로 판단되는 자들이다. 경관의 비중이 가장 많지만 지방관의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방관 가운데는 목사 등

28) 인조 9년(1631)에 부임한 전식은 인조 9년(1631) 12월 4일 부임하여 인조 11년 4월 18일 교체되어 16개월의 재임기간 보냈다(瓜滿去).

29) 이 경우 병으로 체직 상소를 올리나 친상으로 인해 휴가를 얻어 상경함으로 부모상을 사직의 원인으로 보았다. 대개의 경우 친상을 당하면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30) 政盛은 美政盛事의 줄임말로 보인다. 정성이라는 표현은 『부윤선생안』에는 태종때까지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고려에서 조선조기까지의 표현 관행이었던 것 같다. 고려시대 묘지명에 “又隨任博州副使, 三載政盛”(田起妻高氏墓誌銘)이라는 구절에서 그 사실이 추정된다.

하위직으로 가는 경우도 있으나, 관찰사로 가는 경우도 있어 좌천이라 보기 힘든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 부윤에서 다른 관직으로 이배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재임 기간과 이배 사이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4) 罷職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파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77명이다. 교체 사유가 ‘罷去’, ‘降資遞’, ‘殿最居中遡’³¹⁾, ‘臺遞’, ‘駁遞’, ‘兵使狀啓以拿去’, ‘繡衣封庫’, ‘因臺評遡去’, ‘貶歸’ 등으로 기재된 자들이다. 교체 사유에 ‘파(罷)’를 직접 언급하지 않더라도 강자체나 대체, 나거와 같이 불미스러운 이유로 체직된 경우도 파직으로 판단하였다.

이 가운데 파직의 원인을 분명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25건이며, 감사의 포폄이 13건, 대간에 의한 것이 10건, 암행어사의 봉고나 서계에 의한 것 7건, 업무와 관련되어 해당 기관에서 계장(啓狀)을 올린 것이 20건이다. 업무와 관련되어 수령의 파직을 요구하는 기관이나 인물들은 감영, 병영, 수영을 비롯하여 監賑御使, 厘正使 등 매우 다양했으며, 19세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외에도 강상과 관련된 것이 2건 등이 확인된다. 수령들은 감사와 암행어사 외에도 거의 모든 관련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부윤에서 파직된 자들 77명 가운데 1년을 넘지 못하고 파직된 자들이 38명(49.4%), 1년에서 2년 미만이 31명(40.3%)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2년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부윤선생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경주 부윤의 재임실태를 살펴해보았다.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경주 부윤의 출신 성분과 위상을 확인하기 위해 품계, 출사로, 경주

31) 당상관 이상이 부임하는 지역의 수령은 한 번이라도 전촉에서 中을 받으면 파직됨.

부윤이 되기 전후의 관직 등을 살펴보았다. 경주 부윤은 종2품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부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실제 경주 부윤의 품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4세기~15세기까지는 종2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75% 이상을 차지했으나, 16세기부터는 정3품 당상의 품계를 가진 자들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주 부윤의 출사로는 문과 급제자가 16~18세기까지는 90% 이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19세기에는 상대적으로 문과 출신의 비중이 낮아지고 음직의 비중이 높아졌다. 한편 京官으로 있다가 경주 부윤이 된 자들의 수는 19세기에 오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 19세기에 오면 지방관 출신들이 대폭 증가하고 있었다. 경주 부윤으로 있다가 임명된 관직의 품계를 살펴보면, 경관 종2품은 15세기~16세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경관 정3품 당상 이하는 작은 수이나마 17세기 이후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지방관 종2품인 관찰사로 영전한 인물도 다수 확인되는데 모두 18세기의 인물들이었다. 지방관 정3품 이하의 목사, 부사로 移拜된 자들은 대부분 19세기의 인물들이었다.

다음으로 경주 부윤의 재임 기간과 교체 사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주 부윤의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을 채운 비중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32.2%(15세기), 36.6%(16세기), 8.5%(17세기), 1.4%(18세기), 1.4%(19세기)였다. 18세기 이후 30개월의 임기를 모두 채운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비교적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24개월 이상 재임한 비중은 시기별로 41.5%(15세기), 59.2%(16세기), 21.4%(17세기), 17.4%(18세기), 21.4%(19세기)였다. 15~16세기에 비해 17세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었다. 반면에 재임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비중과 재임 기간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비중은 각각 17세기 이후 40% 내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19세기에 와서 전라도에 부임하는 수령 가운데 현령·현감 등 종5품과 종6품의 수령들은 전반적으로 24개월보다 더 오랜 기간을 재임하는 반면, 목사·부사 등 종3품 이상의 높은 품계의 수령들은 12~23개월 근무한 사례가 가장 많았던 현상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된다.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높은 품계의 수령들이 낮은 품계의 수령보다 교체 시기가 빨랐던 것이다.

경주 부윤의 교체 사유는 14세기와 15세기에는 辭職, 移拜만 확인되며 瓜滿, 罷職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16세기 이후에는 10% 내외의 과만과 20%가 넘는 파직이 교체 사유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17세기, 18세

기에는 파직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19세기에는 파직보다 이배로 인한 교체가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19세기에 이배가 파직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다른 지역의 군현에서도 확인된다. 사직은 자의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17세기에 다소 비중이 높았다고는 하나 전 시기에 걸쳐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한편 과만에 해당하는 27명 가운데 26명은 24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냈다. 이 가운데 법정 임기인 30개월 이상의 재임 기간을 보낸 인물들은 14명이다. 임기를 채운다는 것이 요즈음의 기준과는 달리 어느 정도 재임을 한다면 만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사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65명이다. 사직의 원인 가운데 병과 사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직으로 교체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2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65명 가운데 56명(86.2%)이었다.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이배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93명이다. 경관의 비중이 가장 많지만 지방관의 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윤에서 다른 관직으로 이배되는 경우, 재임 기간이 1년 미만에서 2년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재임 기간과 이배 사이의 상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경주 부윤 가운데 필자가 파직으로 판단한 자들은 모두 77명이다. 이들은 감사와 암행어사 외에도 거의 모든 관련 기관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었다. 부윤에서 파직된 자들 77명 가운데 1년을 넘지 못하고 파직된 자들이 38명(49.4%), 1년에서 2년 미만이 31명(40.3%)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이 2년을 넘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들과 경주 부윤으로 임명되고도 미부임한 19명이 모두 19세기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고려한다면, 경주 부윤의 위상은 19세기에 들어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령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19세기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파직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부표 1> 조선시대 경주 부윤의 품계와 출사로 및 임용 상태

순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1	俞光祐	광정대부	미상	미상		1393,1,26	鷄龍山 陪奉 政盛上京
2	安敬良	자현대부	순흥	문과	1393,5,25	1393,9	政盛上京
3	崔雲海	자현대부	통진	음직	1393,10,11	1395,2,10	政盛上京
4	韓理	자현대부	청주	문과	1395,3,8	1396,3,17	政盛上京
5	柳亮	자현대부	문화	문과	1396,4,9	1397,1,29	政盛上京
6	河湍	자현대부	진주	문과	1397,3,1	1397,6,5	政盛上京
7	鄭洪	자현대부	영일	문과	1397,6,25	1398,9,10	肅拜上京中樞院學士以未還
8	黃順常	가정대부	미상	미상	1398,10,23	1400,1,2	政盛上京
9	姜淮伯	정헌대부	진주	문과	1400,2,30	1400,5,23	政盛上京
10	李居易	승록대부	청주	미상	1400,6,12	1400,6,14	政盛上京
11	李行	자현대부	여주	문과	1400,8,24	1402,4,2	政盛上京
12	柳觀	자현대부	문화	문과	1402,6,11	1403,12,18	政盛上京
13	康候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04,3,1	1404,8,7	政盛上京
14	朴經	자현대부	영해	음직	1404,9,18	1404,11,5	政盛上京
15	趙勉	자현대부	미상	미상	1404,12,30	1406,2,21	漢城尹以上京
16	咸傳霖	가정대부	강릉	문과	1406,3,20	1406,은7월21	推忠翊戴開國功臣資憲大夫慶尙道都觀察兼監倉安集轉輸勸農 管學事提調刑獄兵馬公事同知議政府事東原君以監行
17	高居正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06,8	1409,8,15	政盛上京
18	李殷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07,8,27	1408,7,20	政盛上京
19	曹緩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08,8,22	1410,5,20	政盛上京
20	尹向	가정대부	파평	생원	1410,6,10	1412,2,19	節制使革去 肅拜上京未還
21	鄭矩	정헌대부	동래	문과	1412,4,27	1413,7,28	上京
22	尹坤	자현대부	파평	문과	1413,8,8	1415,7,21	判泰安府事以上京
23	權蔓	가선대부	미상	고려사마	1415,8,16	1416,10,6	政盛上京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24	李承幹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16.10.24	1417.6.22	丁酉6月16日右道兵馬都節制使以同月22日上京
25	黃祿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17.7.22	1421.9.14	左總制上京
26	薛再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20.4.5	1420.12.19	上京
27	李之實	자헌대부	양성	미상	1420.12.29	1423.6.19	去
28	吳湜	가선대부	홍산	미상	1423.6.26	1426.3.26	別世
29	趙瑄	가선대부	한양	미상	1426.4.29	1431.7.8	左軍總制上京
30	金乙辛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31.8.12	1436.9.4	中樞院副使以去
31	李垠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36.10.2	1438.7.10	卒于河陽縣監李堰來到見終本家尙州陪歸
32	禹承範	가선대부	단양	문과	1438.9.10	1438.10.9	卒
33	李孝仁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38.12.2	1439.10.9	義城水山寺 太一殿祭告使以發行祭後本鄉榮川 到彼呈辭還任不終
34	李纂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40.2.11	1440.10.1	呈辭去
35	金益生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40.11.17	1441.2.20	加資憲壬戌年 集慶殿改造成資賢樓造成 癸亥2월2일中樞院副使去
36	權克和	가선대부	안동	문과	1441.3.21	1445.7.22	去
37	鄭發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45.8.12	1448.8.24	去
38	任從善	가선대부	장흥	문과	1448.10.5	1452.2.12	去
39	李師元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52.3.19	1454.7	壬申年右司會造成甲戌7월去
40	馬勝	가정대부	미상	미상	1454.9.12	1455.8.19	繼母在喪全羅道谷城到彼
41	李好誠	가선대부	광평	문과	1455.10.24	1456.7.5	左道兵馬節制使移任
42	李鳴謙	가선대부	백진	문과	1456.8.15	1457.2.7	本家昌寧到彼
43	柳規	가선대부	영광	음직	1457.3.8	1458.7.9	本家全羅道南原到彼
44	金淡	가선대부	예산	문과	1458.7.24	1463.7	中樞上京
45	鄭興孫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63.윤7.28	1466.2	行司直去
46	崔嘉復	가선대부	화순	문과	1466.3.6	1467.3.13	有病呈辭行護軍去
47	李念義	가선대부	아산	음직	1467.4.18	1469.윤2.10	行司猛去
48	田桐生	가선대부	남양	문과	1469.3.9	1471.9.6	還本家全州到彼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49	鄭種	가정대부	동래	무과	1471,윤9,9	1472,5,26	還本家全州到彼
50	洪道常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72,5,28	1473,9,12	上京
51	梁順石	가선대부	남원	문과	1473,10,15	1476,2,27	僉知中樞去
52	朴晳	통정대부	밀양	문과	1476,4,6	1478,11,11	行上護軍去
53	李紉東	가선대부	백진	문과	1478,11,9	1481,7,4	中樞去
54	金舜臣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81,7,27	1483,12,27	中樞去
55	李世弼	가선대부	廣州	문과	1484,2,20	1486,8,28	中樞去
56	洪貴達	가정대부	부제	문과	1486,9,18	1489,2,7	同知中樞以本宅咸昌地到彼即日大司憲 宣喚上京
57	尹埈	통정대부	미상	미상	1489,3,20	1491,9,3	因背腫別世
58	崔應賢	가선대부	강릉	문과	1491,11,13	1494,9,20	同知中樞府事去
59	許誠	통정대부	하양	문과	1494,11,5	1495,6,17	別世
60	閔永肩	가선대부	미상	미상	1495,9,21	1498,3,18	副護軍去
61	潘佑亨	통정대부	거제	문과	1498,3,21	1500,11,23	行大護軍去
62	慎承福	통정대부	미상	미상	1500,11,18	1502,10,5	還官
63	曹淑沂	가선대부	창녕	문과	1503,9	1505,11	去
64	芮忠年	통정대부	미상	미상	1506,1,11	1507,12,27	傷寒別世
65	閔祥安	가정대부	여흥	문과	1508,3,3	1510,9	同知中樞去
66	李繼福	가선대부	진의	문과	1510,9,17	1513,3,25	上護軍去
67	李璵	통정대부	안안	문과	1513,3,20	1515,11,9	護軍去
68	柳希渚	통정대부	문화	문과	1515,11,10	1518,7,14	前任判決事時事以散去
69	金安老	통정대부	연안	문과	1518,9,1	1519,10,8	己卯9월22日母喪10월8日去
70	柳仁淑	통정대부	진주	문과	1520,1,13	1521,7,27	散
71	黃孟獻	가정대부	장수	문과	1521,9,15	1524,1,29	去
72	黃璵	통정대부	덕산	문과	1524,3,4	1526,10	무기제
73	金楊震	통정대부	풍산	문과	1526,10,18	1528,11	病辭去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74	姜澈	가이대부	진주	문과	1529.2.11	1531.9.2	同知中樞去
75	金季愚	통정대부	연안	문과	1531.9.15	1532.11.29	工曹參議去
76	許寬	통정대부	하양	문과	1533.1.3	1534.1.15	病辭
77	李賢輔	통정대부	영천	문과	1534.윤2.22	1536.6	病辭
78	曹漢弼	통정대부	청녕	문과	1536.8.13	1536.12.13	易簣
79	趙琛	통정대부	순창	문과	1537.2.4	1538.6.4	散去
80	吳準	자헌대부	연일	문과	1538.8.7	1539.8.20	散去
81	洪愼	통정대부	남양	문과	1539.9.21	1541.8.5	易簣
82	林鵬	통정대부	나주	문과	1541.10.9	1544.2	去
83	金緣	가선대부	광산	문과	1544.2.24	1544.9	易簣
84	權祺	통정대부	안동	문과	1544.10.2	1546.3.28	辭去
85	姜顯	가선대부	진주	문과	1546.5.13	1548.12.13	右尹去
86	李濬	가선대부	고성	문과	1548.12.28	1551.8.8	左尹去
87	金希說	가선대부	순천	문과	1551.9.6	1551.11.13	腫病易簣
88	李純亨	통정대부	덕순	문과	1552.4.2	1553.1.15	癸丑1월9日集慶殿慰安祭府尹夫人歸葬受由同月15日向衿川本宅累月不還臺論駁遞
89	柳智善	통정대부	문화	문과	1553.윤3.24	1555.10.2	遞去 民思其澤立碑
90	李夢弼	가선대부	진주	문과	1555.윤11.1	1558.1	上護軍去百餘間客舍咄嗟成之不勞民力民思立碑
91	權德挺	가선대부	안동	문과	1558.2.28	1560.8	護軍去
92	李楨	통정대부	동성	문과	1560.9.22	1563.2	무기제
93	李仲樸	통정대부	영천	문과	1563.2.8	1564.8.8	罷去
94	許樸	통정대부	양천	문과	1564.9.18	1565.2.27	病辭去
95	韓沃	통정대부	청주	문과	1565.5.4	1567.11.10	瓜滿還朝
96	柳順善	통정대부	진주	문과	1567.12.13	1568.12.13	駁遞
97	姜士弼	통정대부	진주	문과	1569.1.3	1571.6.16	瓜滿還朝
98	李齊閔	통정대부	진주	문과	1571.8.4	1574.2.2	遞去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임일	교체일	교체사유
99	朴承任	통정대부	반남	문과	1574.3.13	1575.8.5	京罷去
100	趙博	통정대부	평양	문과	1575.10.1	1578.1.25	瓜滿還 朝
101	梁應鼎	통정대부	재주	문과	1578.2.20	1578.5.7	以前任赴京使時事被臺論同年5월7일罷去
102	李選	통정대부	영천	문과	1578.5.9	1580.11.8	自公州牧使除 朝辭赴任庚辰11월8일瓜滿上護軍去
103	安宗道	통정대부	순흥	문과	1580.12.13	1582.12.27	京罷去
104	申漣	통정대부	고령	문과	1583.온2.4	1585.12.13	因灾傷罷去
105	李女培	통정대부	성주	문과	1585.2.6	1586.2.15	罷去
106	具思孟	통정대부	능성	문과	1586.3.21	1588.10.15	瓜滿僉知去
107	黃允吉	통정대부	장수	문과	1588.11.7	1589.10	灾傷罷去
108	朴毅長	통정대부	무안	무과	1589.12.6	1593.7.7	以文官還去(인진란을 맞아)
109	尹仁涵	통정대부	과평	문과	1593.7.7	1599.5.19	己亥5월19일遷爲星州牧使兼右道防禦使去
110	李時發	통정대부	경주	문과	1599.5.19	1601.10.3	신축9월18일特加嘉善除本道留營觀察使兼巡察使大邱都護府使10월3일謝 恩肅拜事上京民思立碑
111	尹安性	통정대부	과평	문과	1601.10.29	1602.7.19	特加嘉善陞拜咸鏡北兵使去
112	李時彦	가의대부	진주	문과	1602.8.30	1604.8.21	揔鍊兵法能治軍務因巡檢御史狀 啓特加資憲除本道留營觀察使兼都巡察使謝 恩肅拜事上京
113	尹暉	통정대부	과평	문과	1604.온9.1	1606.4.14	罷還
114	金穎男	통정대부	광산	문과	1606.5.22	1606.7.17	罷還
115	許錦	통정대부	양진	생원	1606.8.27	1607.2.13	卒逝
116	吳瑾	가선대부	의령	문과	1607.5.8	1608.7.22	罷去
117	吳澤	통정대부	고창	문과	1608.9.15	1609.2.6	罷去榮川本家到彼
118	崔沂	통정대부	해주	문과	1609.4.26	1610.11	受由上京仍爲罷還
119	權泰一	통정대부	안동	문과	1611.1.17	1613.10.19	瓜滿後加3朔以副護軍還還安東本宅
120	李安訥	통정대부	덕수	문과	1613.11.24	1614.9.6	甲寅9월以善山監試官事被諫院之駁本月26日上京
121	尹暉	가선대부	해평	문과	1614.11	1617.2.4	受由上京仍授本道觀察使兼巡察使
122	尹孝全	정헌대부	남원	문과	1617.4.24	1619.2.5	別卅3월6일發引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 사유
123	尹銑	자헌대부	과평	문과	1619,5,6	1620,1,18	棄官上京
124	金存敬	자헌대부	광산	문과	1620,5,13	1623,2,3	簡滿去
125	呂祐吉	가인대부	함양	문과	1623,5,3	1623,8,22	邊兵使狀 啓以拿去
126	李廷臣	가인대부	전주	문과	1623,10,4	1626,7,21	逆去 因號牌完?間監司狀啓加四朔仍任
127	尹義立	가인대부	과평	문과	1626,10,10	1628,10,16	本道監司除授上京
128	權沾	가인대부	안동	문과	1628,11,12	1629,7,15	卒逝
129	鄭文翼	가인대부	초계	문과	1629,8,25	1630,10,26	御史 啓罷
130	全湜	통정대부	옥천	문과	1631,12,4	1633,4,18	瓜滿去
131	朴弘美	통정대부	원성	문과	1633,7,4	1634,2,17	體府從事官 啓罷
132	睦長欽	가선대부	사천	문과	1634,4,16	1635,11,18	貶罷
133	閔機	통정대부	여흥	문과	1636,4,3	1637,6,26	貶罷
134	李必榮	가인대부	廣州	문과	1637,8,4	1640,7,11	瓜滿去
135	朴守弘	통정대부	밀양	문과	1640,8,1	1643,2,1	瓜滿去
136	宋時吉	통정대부	여산	문과	1643,2,12	1644,11,11	棄官上京因暗行御史啓罷
137	感大遂	통정대부	진주	문과	1645,1,11	1645,3,27	西送卽限未及巡使啓罷
138	李民奭	가선대부	영천	문과	1645,윤6,4	1646,6,20	棄官去
139	金尙	통정대부	상산	문과	1646,10,10	1648,9,18	棄官去
140	朴濤	가인대부	밀양	문과	1648,11,24	1649,8,16	以僞葬官上京仍爲辭遞
141	洪得一	통정대부	남양	문과	1650,1,3	1650,7,28	因缺主之變同年5월29일降牧使同年7월28일罷去
142	羅緯素	통정대부	나주	문과	1650,9,2	1652,4,1	罷去
143	徐祥履	통정대부	대구	문과	1652,6,12	1653,10,13	去
144	鄭良弼	가선대부	동래	문과	1654,1,12	1655,10,13	推補御使 啓罷去
145	李天基	통정대부	연안	문과	1655,10,18	1658,1	瓜滿去
146	嚴鼎耆	가인대부	영월	문과	1658,4,4	1659,10,13	病辭去立碑
147	蔡忠元	통정대부	평강	문과	1659,11,19	1662,11	瓜滿仍任遞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홀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148	鄭基豐	통정대부	초계	문과	1663.1.2	1663.9	辭去
149	李尙逸	통정대부	벽진	문과	1663.10.10	1664.7	刑曹參議冬至副使以遞去
150	沈世鼎	통정대부	청송	문과	1664.8.20	1665.8.8	因杖逆罪人徑斃事棄歸
151	權珩	통정대부	안동	문과	1665.10.18	1666.6.26	辭去
152	洪處大	통정대부	남양	문과	1666.10.25	1669.1.20	瓜滿戶曹參議除授去
153	閔周冕	통정대부	여흥	문과	1669.3.3	1670.4.8	以觀親受由上京因杖夫罪人眞詳事見罷未還
154	李之翼	통정대부	하평	문과	1670.9.25	1671.8.1	受由上京因本道監司 啓罷
155	李世翊	통정대부	부평	문과	1671.10.25	1672.6.2	以觀親受由上京因眠病呈遞
156	任有後	가선대부	풍천	문과	1672.9.12	1673.8.28	別世9월28일發行
157	權尙矩	통정대부	안동	문과	1673.11.1	1676.3.2	瓜滿去
158	任奎	통정대부	풍천	문과	1676.5.17	1677.3.14	山陵都監時不勤事拿去
159	金賓	통정대부	의성	문과	1677.5.20	1679.1.27	政因國馬瘦一匹降資遞職2월25일發行
160	李稹	통정대부	덕수	문과	1679.3.11	1679.7	冬至副使以戶曹參議除授上京
161	南天澤	통정대부	영양	문과	1679.9.9	1679.12.6	受由還歸本宅因本道監司 啓罷
162	朴廷薛	통정대부	함양	문과	1680.4.8	1680.4.18	因大評罷去
163	李東溟	통정대부	덕수	문과	1680.6.20	1681.1.16	因臺評 遞去
164	李慣	통정대부	연안	진사	1681.2.21	1683.윤6.3	受由本宅上京
165	權脩	통정대부	안동	문과	1683.8.2	1684.7.3	受由上京辭遞
166	安如石	통정대부	순흥	문과	1684.9.13	1686.1.13	辭遞
167	尹理	통정대부	과평	문과	1686.윤4.30	1687.6.6	罷去
168	愼景尹	통정대부	기창	문과	1687.8.4	1688.8.6	受由上京以山陵奉審事仍遞
169	吳始復	가선대부	동북	문과	1688.11.2	1689.3.3	吏曹參判去
170	任弘望	통정대부	풍천	문과	1689.윤3.11	1689.6.27	罷去
171	俞夏謙	통정대부	기계	문과	1689.8	1690.6	棄官
172	金海一	통정대부	예안	문과	1690.7	1691.9.17	別世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홀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173	元振澤	통정대부	원주	문과	1691,12,1	1692,4,11	罷去
174	許頴	통정대부	양천	문과	1692,6,1	1693,8,6	受由上京仍辭遞
175	孫萬雄	통정대부	경주	문과	1693,11,24	1694,4,26	受由還本宅仍以臺罷
176	南致薰	통정대부	의령	문과	1695,4,8	1697,4,26	瓜遞
177	洪得禹	통정대부	남양	사마시	1697,9,1	1698,1,10	遞去
178	沈極	통정대부	청송	문과	1698,3,7	1699,7,6	罷去
179	李衡祥	통정대부	진주	문과	1699,8,4	1670,3,6	見罷去
180	韓命相	통정대부	청주	문과	1670,5,25	1702,윤6	瓜遞去
181	柳以復	통정대부	진주	문과	1702,9,12	1703,4,13	以前任義州楊州事因臺許罷去
182	呂必容	통정대부	함양	문과	1703,6,1	1705,8,17	瓜遞去
183	許玠	통정대부	양천	문과	1705,9,18	1706,6,17	遞去
184	李麟徵	통정대부	연안	문과	1706,8	1708,3	辭歸
185	鄭是先	통정대부	동래	음직	1708,8,11	1709,5,8	以病辭歸
186	南至薰	통정대부	의령	문과	1709,7,12	1711,8	受由上京 瓜遞
187	權以鎭	통정대부	안동	문과	1711,12,6	1713,3,6	受由歸本宅仍以病辭遞
188	李喬岳	통정대부	용인	문과	1713,7,15	1714,4,17	以病辭遞
189	沈宅賢	통정대부	청송	문과	1714,6,14	1715,6	移拜 江原監司
190	鄭必寅	통정대부	동래	문과	1715,8,1	1716,6	罷去
191	金致龍	통정대부	인양	문과	1716,7,24	1717,12	以松田事因水使狀 啓罷去
192	俞崇	통정대부	창원	문과	1718,1,12	1718,8	以防布事因水使狀 啓罷
193	李禎翊	통정대부	한산	문과	1718,9,7	1720,8,27	瓜遞
194	李師尙	통정대부	전주	문과	1721,1,21	1722,1,10	大司諫承 召
195	權世恒	통정대부	안동	문과	1722,4,13	1723,2,23	辭遞
196	鄭楷	통정대부	영일	문과	1723,5,1	1724,윤4,20	由狀遞歸
197	柳萬重	통정대부	진주	문과	1724,10,6	1725,4,6	降資遞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홀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198	趙鳴鳳	통정대부	양주	문과	1725.5.19	1725.11.20	辭遞
199	趙文命	통정대부	풍양	문과	1726.1.24	1727.윤3.3	辭遞
200	崔宗周	통정대부	삭녕	문과	1727.9.1	1728.7	臺遞
201	李重觀	통정대부	전주	문과	1728.8.16	1730.8	罷去
202	金始燭	통정대부	강릉	문과	1730.11	1732.10	移拜 慶尙道觀察使
203	金應福	통정대부	광산	문과	1732.12	1733.2	因監賑 御使狀 啓罷去
204	金浩	통정대부	안동	문과	1733.3	1734.1	移拜公洪道觀察使
205	李壽沆	가선대부	여주	문과	1734.2	1734.12	甲寅年秋冬等 殿最居中適
206	鄭彦燮	통정대부	동래	문과	1735.윤4	1736.2	以監率旨實狀罷
207	金聖運	통정대부	경주	문과	1736.4	1737.12	移拜江秦道觀察使
208	趙明謙	통정대부	임천	문과	1738.1	1739.5	移拜 慶尙道觀察使
209	尹彙貞	통정대부	파평	문과	1739.7	1740.3	貶歸
210	趙明澤	통정대부	임천	문과	1740.4	1742.6	瓜滿遭喪去
211	權瑒	통정대부	안동	문과	1742.8	1743.1	貶歸
212	宋徵啓	통정대부	여산	문과	1743.2	1744.8	移拜大司諫
213	鄭弘濟	통정대부	영일	문과	1744.10	1746.윤3	以前任南陽軍器事被拿上去
214	李成中	통정대부	전주	문과	1746.4	1747.9	移拜副提學去
215	李裕身	통정대부	함평	문과	1747.10	1748.9	棄歸
216	趙明鼎	통정대부	임천	문과	1749.2.12	1751.7.4	瓜遞
217	黃景源	통정대부	장수	문과	1751.8	1752.8	移拜大諫
218	金善行	통정대부	안동	문과	1752.10	1754.2	因厘正使書 啓被拿罷職
219	洪益三	통정대부	남양	문과	1754.4.15	1755.7.13	政移拜大司諫
220	李禔得	통정대부	한산	문과	1755.10	1757.8	移拜大司諫
221	尹學東	통정대부	해평	문과	1757.10	1759.8	무기제
222	鄭存謙	통정대부	동래	문과	1759.9	1760.7	陸拜吏曹參議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223	洪良漢	통정대부	종산	문과	1760,7	1762,6	以前承旨事罷職
224	李海重	통정대부	한산	문과	1762,7	1764,10	正言郭鎮純疏論本州前校理李海重有府尹特罷之命拿憲黜明狀 聞諸李海重有府尹特罷之命拿憲黜明狀
225	洪梓	통정대부	남양	문과	1764,12,3	1767,4	瓜遞
226	洪述海	통정대부	남양	문과	1767,5,13	1768,11,22	以北關繡衣時事坐罷翌月還京城
227	李復祥	통정대부	진주	문과	1768,12,26	1769,5,4	遞職
228	鄭興曾	가선대부	미상	미상	1769,5,15	1769,11,18	罷去
229	金載順	통정대부	연안	문과	1769,12,29	1772,7	무기제
230	李長輝	통정대부	미상	미상	1772,8	1773,1	遞職
231	尹得雨	가선대부	해평	문과	1773,2	1774,8	別世
232	尹得毅	통정대부	해평	문과	1774,9	1776,1	遞職
233	徐有寧	가선대부	대구	문과	1776,2	1777,5	遞職
234	尹弘烈	통정대부	해평	문과	1777,7	1777,8	定配
235	金尙集	통정대부	강릉	문과	1777,9	1779,5	遞職
236	沈頤之	가선대부	청송	문과	1779,10,13	1780,3,27	移拜洪忠道觀察使
237	李鎮翼	가선대부	진주	진사	1780,5,6	1781,6	貶罷
238	尹坊	가선대부	파평	문과	1781,8,19	1783,8	瓜遞
239	金光默	통정대부	청풍	문과	1783,9,18	1785,6	貶罷
240	金履容	통정대부	미상	미상	1785,7,22	1787,9,3	以兵使相避遞職
241	李秉鼎	가선대부	진주	문과	1787,9,22	1788,8,14	移拜大司憲
242	閔台赫	통정대부	여흥	문과	1788,9,1	1789,2,22	以移轉事罷去
243	林濟遠	통정대부	나주	문과	1789,3,6	1791,5,22	遞職
244	姜韓正	통정대부	진주	문과	1791,6	1793,5	遞職
245	李益運	통정대부	함평	문과	1793,6	1794,2,15	移拜右副承旨
246	宋銓	통정대부	은진	문과	1794,3,2	1795,8,10	遞職
247	俞漢謨	통정대부	미상	미상	1795,8,28	1797,7	貶遞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248	柳燭	가신대부	진주	문과	1797.7.24	1798.6	遞職
249	吳鼎源	통정대부	나주	문과	1798.6.17	1800.윤4.1	去
250	李尙度	가신대부	廣州	문과	1800.윤4.27	1802.5	補衣罷黜
251	崔獻重	통정대부	미상	미상	1802.5.25	1804.7.10	去
252	尹益烈	통정대부	해평	문과	1804.7.26	1805.3.15	遞
253	朴宗羽	통정대부	반남	문과	1805.4.12	1807.6.22	遞
254	朴宗羽	통정대부	반남	생원	1807.7.17	1809.8.10	遞
255	李采	통정대부	우봉	진사	1809.9.1	1811.5	遞
256	金魯應	통정대부	경주	문과	1811.6.17	1812.4	移拜東來來府使
257	申淑	가신대부	미상	미상	1812.5.20	1813.7	因補啓罷職
258	洪履簡	통정대부	남양	진사	1813.8.18	1815.9.14	瓜遞
259	李德鉉	통정대부	용인	문과	1815.10.6	1817.12.27	瓜遞
260	李愚在	통정대부	한산	문과	1818.1.30	1818.10.27	遞
261	尹羽烈	통정대부	해평	문과	1818.11.22	1819.6.15	貶罷
262	洪冕燮	통정대부	남양	문과	1819.7.29	1820.7.11	庚辰6월受由上京7월11일遞
263	李光憲	통정대부	우봉	문과	1820.8.10	1821.12.27	辛巳11월受由上京12월27일遞
264	李潞	통정대부	진주	문과	1822.1.24	1823.4.22	遞
265	金基常	통정대부	청풍	음직	1823.6.2	1825.6	瓜遞
266	朴基宏	통정대부	순진	문과	1825.7.14	1825.12	吏曹陞降罷
267	林顔喆	통정대부	나주	문과	1826.1.29	1826.12.15	貶罷
268	林處鎮	통정대부	나주	문과	1827.1.30	1827.12.15	貶罷
269	李元八	통정대부	전주	문과	1828.2.7	1829.12.26	拜大司諫去
270	李軾中	통정대부	진의	문과	1830.2.3	1830.10.19	京遞
271	朴宗薰	승록대부	반남	문과	1830.11.4	1831.3.10	拜判義禁去
272	鄭禮容	통정대부	동래	문과	1831.4.15	1832.6.25	拜大司諫去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273	洪鍾遠	통정대부	남양	문과	1832,7,25	1833,8,20	遞
274	金邁淳	통정대부	안동	문과	1833,9,22	1834,6,17	陸資拜江華留守去
275	尹致謙	가선대부	해평	문과	1834,7,25	1836,11	京遞
276	李寅弼	통정대부	전주	문과	1836,11,28	1837,12,25	遞 丙申敕餘下納田稅許多未捧來府論 啓營門狀罷
277	趙基復	통정대부	임진	생원	1838,2,6	1839,1,2	遞 兵營防錢經歲不納兵使尹禹鉉直爲請罷兵使則自巡營 啓罷
278	俞章煥	통정대부	기계	문과	1839,2,6	1840,9,11	以監司洪相公在岳嶽避庚子9월11일遞
279	鄭寂朝	통정대부	동래	문과	1840,10,17	1841,2	京遞 吏奴捕3吏權詳許捧事邑民至有 上言之舉巡營 啓罷
280	朴長復	가선대부	밀양	문과	1842,1,21	1843,6,15	貶罷 年前 上言時戶敏錢乾沒條查徵之際西面堤下李班兄弟併命於杖下因此貶罷繼有冤家擊鎗邊定配
281	李賢耆	통정대부	한산	진사	1843,윤7,2	1844,2,16	卒逝
282	成原默	통정대부	창녕	문과	1844,3,27	1846,5,7	丙午4월受由上京5월7일拜右副承旨
283	李時愚	통정대부	연안	문과	1846,윤5,25	1847,12,20	拜右副承旨遞
284	權濩	통정대부	안동	문과	1848,2,12	1849,4,10	以異樣船過去形止稽報事自統營狀罷
285	李源祚	통정대부	정산	문과	1849,5,1	1850,4,19	因繡 啓罷
286	沈敦永	통정대부	청송	문과	1850,5,25	1851,3,1	受由上京呈遞
287	金穰根	통정대부	안동	문과	1851,5,21	1852,10,14	壬子9월22일受由上京10월14일遞
288	南性教	가선대부	의령	문과	1852,12,22	1854,6,9	因繡 啓罷
289	朴宗休	가선대부	반남	문과	1854,7,12	1855,11,20	自京遞職
290	宋近洙	통정대부	은진	문과	1856,1,18	1857,5,6	自京遞職
291	尹行謨	통정대부	과평	문과	1857,윤5,19	1858,3,19	移拜東萊府使
292	金在田	가선대부	광안	문과	1858,4,19	1859,4,26	受由上京
293	韓啓源	가선대부	청주	문과	1859,8,2	1860,윤3	楊州牧使相換去
294	宋泰熙	통정대부	은진	진사	1860,5,23	1861,4,20	楊州牧使相換來 遞
295	宋廷和	가선대부	은진	문과	1861,5,22	1862,4,26	京遞
296	尹堉	통정대부	과평	문과	1862,5,28	1863,10,29	癸亥8월16日以兵營軍官減額領事相較於兵營引義上京10월29일辭遞
297	洪翼燮	통정대부	남양	문과	1863,11,17	1866,7,24	乙丑12월巡營 狀請加1年丙寅7월24日繡衣封庫

순 번	성명	품계	본관	과거 (출사로)	도입일	교체일	교체사유
298	俞錫煥	가선대부	기계	문과	1866.8.21	1868.12.1	瓜遞
299	趙耆永	통정대부	미상	미상	1869.2.18	1871.6	京遞7월4일還朝(辛미2월以還弊民庫之塙球城堞砲軍之修置各有條理民頌右蔚事因道啓加資更加1瓜6일京遞)
300	李能燮	가선대부	여주	문과	1871.6.25	1871.9	辛未9월以身柄自京遞職移拜吏曹參判9월19일還第
301	李萬運	가선대부	廣州	문과	1871.9.29	1873.12.14	還第
302	林翰洙	가선대부	나주	문과	1874.2.21	1875.3	遞
303	李敦相	가선대부	용인	문과	1875.5.14	1876.4.22	遞
304	金黃鎭	통정대부	안동	문과	1876.5.24	1877.12.15	遞
305	閔昌植	통정대부	여흥	문과	1878.3.12	1879.2.16	遞
306	閔致序	통정대부	여흥	생원	1879.윤3.20	1881.6	무기제
307	吳叔善	가선대부	미상	미상	1881.7.29	1882.3	壬午3월上京6월以工曹參判蒙 批遞
308	鄭顯顥	통정대부	초계	진사	1882.7.24	1882.11.20	移拜咸鏡道德源府使
309	金元性	가선대부	청풍	문과	1882.12.21	1885.3	遞
310	閔泳奎	가선대부	여흥	문과	1885.5.29	1886.7	政以平安道蔚邊府使移拜
311	宋道淳	통정대부	은진	문과	1886.9.16	1887.5	移拜淸州牧使
312	趙駿九	통정대부	미상	미상	1887.7.11	1887.10.15	移 拜密陽府使
313	金岳熙	통정대부	경주	문과	1888.2.28	1888.9.20	政相換楊州牧使
314	趙駿九	통정대부	미상	미상	1888.11.7	1889.6.15	貶罷
315	民泳稷	통정대부	여흥	생원	1889.8.10	1890.2.16	京遞
316	盧泳敬	통정대부	光州	문과	1890.2.25	1892.1.3	左副承旨去京
317	閔泳壽	통정대부	여흥	문과	1892.2.2	1893.4.17	移拜靈光郡守
318	閔致舊	가선대부	여흥	문과	1893.5.12	1894.7.12	京遞
319	南學熙	통정대부	의령	문과	1894.7.15	1895.12.3	辭職上京

참고문헌

『經國大典』.

『慶州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慶州市史』 제2편 역사, 경주시사편찬위원회, 2006.

『세종실록』.

『承政院日記』.

具玩會, 「先生案을 통해 본 朝鮮後期の 守令」, 『경북사학』 4, 1982.

具玩會, 「世宗朝의 守令六期法」, 『경북사학』 11, 1988.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94, 2020.

권기중,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 - 전북 25개 군현을 대상으로」, 『태동고전연구』 41, 2018.

김양수·김양식, 「조선후기 忠淸監司와 淸州守令의 출신성분과 재임실태」, 『한국사연구』 125, 2004.

김의환, 「조선시대 丹陽郡守의 前歷과 在任實態 - 『丹陽郡先生案』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14(1), 2011.

李樹健, 『朝鮮時代 地方行政史』, 민음사, 1989

문광근, 「19세기 경주부의 재정운영과 임술민란」, 『역사와 담론』 65, 2013.

宋鍾復, 「昌寧 縣監의 交遞와 在任에 關한 一考察」, 『문명연지』 17, 2006.

李東熙, 「19世紀 前半 守令의 任用實態」, 『전북사학』 11·12, 1989.

李東熙, 「朝鮮時代 全羅道 扶安縣監의 任用實態」, 『전라문화논총』 6, 1993.

이성임, 「조선시대 富平府使의 재임실태」, 『인천학연구』 2(1), 2003.

李成妊, 「조선시대 仁川府使의 임용실태」, 『박물관지』 4, 2002.

李源鈞, 『朝鮮時代 地方官의 交遞에 關한 研究』,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趙喆濟, 「『慶州先生案』의 內容分析과 傳來經緯」, 『신라학연구』 6, 2002.

許興植, 「경주선생안 해제」, 『慶州先生案』, 아세아문화사, 1982.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부교수 / sigg2001@hanmail.net)

주제어: 경주부윤, 수령, 선생안, 재임기간, 교체사유

논문투고: 2023. 5. 23. 심사완료: 2023. 7. 17. 게재확정: 2023. 7. 17.
--

<Abstract>

Gyeongju Buyuns' Term in Office and Reasons for Replacement in Joseon with a Focus on *Buyunseonsaengan*

Kwon Ki-jung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reality of local leaders' term in office in Joseon based on the “Buyunseonsaengan” of Gyeongju-bu during the dynasty. In principle, those who had the Jong 2 Pum rank were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Gyeongju Buyun, bu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actual ranks according to periods. Buyuns in the Jong 2 Pum rank or higher accounted for a majority in Gyeongju Buyuns until the 14th~15th century, but those who had the Jeong 3 Pum rank accounted for 70% or higher since the 16th century.

As for the routes of going into government service for Gyeongju Buyuns, an absolute majority of 90% or higher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until the 16th~18th century. Entering the 19th century, their percentage dropped relatively with that of Eumjiks increasing. The number of Gyeongggwan-turned Gyeongju Buyuns made a clear decrease in the 19th century, when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turned Gyeongju Buyuns made a sharp increase.

The study then examined the percentage of Gyeongju Buyuns that served out their legal term of 30 months or longer and found that the percentage was 32.2%(15th century), 36.6%(16th century), 8.5%(17th century), 1.4%(18th century), and 1.4%(19th century). It was a very rare case that a Gyeongju Buyun served out his term of 30 months or longer since 18th century. The percentage of Gyeongju Buyuns that held office for relatively long 24 months or longer was 41.5%(15th century), 59.2%(16th century), 21.4%(17th century), 17.4%(18th century), and 21.4%(19th century). The

percentage decreased definitely since the 17th century compared to the 15th~16th century. The percentage of Gyeongju Buyuns that failed to serve one year in office or served one~two years in office was high at around 40% each since the 17th century.

As for the reasons to replace a Gyeongju Buyun, only resignation and transfer were confirmed in the 14th and 15th century with no confirmed cases of completing the term and being dismissed from office. Since the 16th century, the cases of completing the term and being dismissed from office emerged as new reasons for replacement at around 10% and over 20%, respectively. The percentage of dismissal was the highest in the 17th and 18th century. Replacements due to transfer were more than replacements due to dismissal in the 19th century, which tendency was confirmed in kuns and hyeons of other regions in the same century.

Considering the fact that 19 people that were appointed as Gyeongju Buyun and did not serve in office all happened in the 19th century along with those facts, it is apparent that the status of Gyeongju Buyun was lower in the 19th century than previous periods. Their term in office showed a very similar pattern to that of other regions. The leaders of kuns and hyeons for which individuals with a high rank were commissioned served in office for a shorter time regardless of changes to the status of kuns and hyeons. In addition, those who were dismissed had a short term in office, which indicates that the supervision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worked in the 19th century.

Key Words: Gyeongju Buyun, leader, Seonsaengan, term in office, reason for replacement